

信用狀 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考察

(信用狀去來의 獨立·抽象性을 中心으로)

(The study of the rights and the liabilities of the issuing bank under a documentary commercial credit)

高 炅 杓*

目 次

- | | |
|--------------------|---------------------|
| 1. 序 論 | 3. 信用狀 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 |
| 2. 信用狀去來慣行의 原理와 特質 | 4. 結 論 |

1. 序 論

戰後冷戰體制的 崩壞, 유럽의 統合, 獨逸이 統一, 蘇聯聯邦의 崩壞, 地域紛爭의 激化 等 國際政治의 急激한 變化와 NAFTA의 認准, APEC結成 等 地域經濟블록主義의 擴大深化, 우루과이 라운드의 妥結과 WTO體制的 出帆 論議 等 國際貿易環境의 變化는 無限競爭時代를 豫告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對外貿易政策의 全面的 再檢討를 요청하고 뿐만 아니라 企業의 經營管理 및 經營戰略의 刷新, 그리고 各 分野의 國際貿易業務擔當者들의 思考의 轉換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즉 全世界的인 無限競爭時代에 있어서, 企業은 經營의 國際化 및 多角化, 製品의 差別化戰略의 強化와 對外貿易 去來戰略의 一大 刷新과 技術의 先進化를 強力히 推進해야 하며, 國際貿易에 대한 認識 轉換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年代 初만하더라도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미미하였으나 輸出이 100억달러를 넘어서 1977년에는 1.0%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 후에도 꾸준한 上昇勢가 계속되어 輸出은 1987년에, 輸入은 1989년에, 貿易額은 1988년에, 각각 2%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1992년에는 輸出比重이 2.10%, 輸入은 2.17%로서, 貿易額 基準으로 하여, 世界貿易에 있어서 韓國의 輸出額은 대만, 中國에 이어 13位, 韓國의 輸入額은 홍콩, 스페인에 이어 12位를 記錄하고 있다.”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貿易學科 副教授

1)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93, 1993. 10. 30. 刊

이러한 輸出의 急速한 增大는 不均衡成長戰略(Strategies of unbalance growth)²⁾에 의한 정부의 輸出드라이브政策의 強力한 推進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동안 國際貿易環境이 韓國의 輸出振興에 대하여 매우 友好的이고 讓許的이었음을 否定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好意的인 貿易環境이 最近에 접어들어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韓國貿易의 位相 提高로 인하여 無限競爭環境으로 변모되었으나, 過密한 人口密度, 賦存資源의 貧弱, 就業擴大問題 등 韓國民의 삶의 質을 向上等 여러가지 社會·經濟的인 條件上 우리나라는 對外開放의 經濟成長戰略을 持續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國內外的인 貿易環境下에서의 民族生存과 國家의 持續的 繁榮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모든 對外政策과 企業의 經營管理戰略은 國際貿易環境을 克服할 수 있는 側面에서 講究되어야 할 것이며, 巨視的, 微視的 戰略을 樹立하여 持續的으로 추진하고 이의 中心體는 國家競爭力增進이어야 한다. 즉 國家의 成長戰略과 地方政府의 開發戰略 그리고 企業의 經營管理戰略은 國際競爭力의 增大에 focus를 두고 樹立되어야 하며 政府의 官吏, 企業人, 勤勞者 등 모든 韓國人의 意識도 國際競爭力이라는 視覺에서 進取的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특히 昨今の 國內外 環境을 直視해 볼 때 企業經營에 있어서 國際競爭力은 매우 重要하고 繼續企業(going concern)으로서의 價値創造을 위해서는 必須的인 要素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企業이 成功하느냐 失敗하느냐를 判가름하는 것은 바로 競爭에 있으며, 競爭은 企業이 더 좋은 成果를 낼 수 있도록 革新을 追求하게 하고 모든 構成員들이 함께 團結할 수 있도록 企業文化를 形成시키고 適切한 經營活動을 展開토록 하기 때문이다.³⁾ 競爭戰略이란 利潤을 創出할 수 있는 有利한 競爭的 地位를 確保하기 위한 戰略인 바, 國際貿易去來에 있어서의 競爭的 地位確保는 貿易去來의 成敗를 가름하는 必須的 要因이며 이러한 國際貿易去來戰略은 貿易契約에서부터 貿易決濟 및 事後管理에 이르기까지 各 部門마다 國際競爭力 確保라는 價値사슬(value chain)에 連繫되어 있고, 또한 國際競爭力 創出의 要諦는 人的要因(human)과 時間要因(time)이라고 볼 수가 있다. 貿易去來는 言語, 習慣, 法律, 通貨, 制度 등이 서로 다른 나라 또는 地域간에 이루어지는 商去來이기 때문에 貿易去來는 여러가지 商事紛爭에 露出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商去來上의 紛爭發生은 企業의 人的 時間的으로 浪費的 要因이 되고, 貿易去來上의 損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商事紛爭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은 企業의 國際競爭力 確保에 絕對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本 稿에서는 國際貿易去來에서 貿易決濟手段으로 널리 利用하고 있는 信用狀에 관하여의 確한 知識과 理解를 增進하고 信用狀에 관한 紛爭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하여 信用狀의 原理를 살펴보고 信用狀去來에 있어서의 信用狀 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를 信用狀去來의 獨立·抽象性을 中心으로 分析 考察하여 信用狀에 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信用狀에 關聯된 紛爭의 防止를

2)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Tele University Press, 1958.

3) 趙東成 譯, 競爭優位, pp. 15, 1991. 8. 刊

통하여 貿易業體의 對外貿易力을 증진하고 結果的으로 우리나라의 國際競爭力의 增大에 寄與하고자 한다.

本 論文은 第2章에 信用狀去來慣行의 原理와 特質, 第3章에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를 分析 考察하고 第4章에 結論으로 構成하고 있으며, 文獻的 方法에 의해 敘述함으로서 本 稿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試圖하였다.

2. 信用狀去來慣行의 原理와 特質

1) 國際貿易去來와 信用狀

國際貿易去來는 言語와 文字, 法律, 習慣, 通貨, 政策 등을 달리하는 隔地者間의 商去來이기 때문에 通常 長時間의 陸上運送, 海上運送, 航空運送 등으로 인한 危險과 商去來上의 價格變動 危險 등 여러가지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즉 國際貿易去來는 國內에서 이루어지는 商去來와는 달리 商品의 引渡와 代金의 決濟에 있어 매우 복잡하면서도 많은 危險이 隨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貿易去來擔當者가 相異한 習慣, 相異한 言語, 相異한 法律을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地理的으로 遠隔地에 있으며 歷史的, 社會的, 經濟的 背景도 서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輸出業者는 代金回收不能의 危險을 念慮하여 商品을 引渡키 전에 그 代金을 미리 받고자 하며 輸入業者는 이와 反對로 商品入手不能危險을 念慮하여 契約商品을 引渡받고 난 후 그 代金을 支給하고자 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國際貿易去來에 있어서 代金의 決濟는 特殊한 境遇의 先支給(payment in advance) 또는 反對로 後支給(sales on credit)을 除外하고는 거의 大部分이 貨換어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⁴⁾ 즉 輸出業者는 輸入業者 앞으로 換어음을 發行하여 여기에 擔保物로서 貨物을 書類化한 書類를 添附하여 銀行에서 어음의 割引의 形式으로 代金을 回收하고 買受人은 그 貨換어음에 대한 支給을 하는 方法이다. 이와같은 貨換制度는 주로 商品의 引受, 引渡와 代金授受와의 時間的 差異에서 생기는 賣買當事者間의 相反된 利害關係를 效果的으로 調整한 것이지만, 契約商品의 引渡와 同時에 決濟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貨換制度에 의해서 買受人의 代金支給이 반드시 保障된 것은 아니다. 國內外去來를 막론하고 商去來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商品을 引渡했음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이 引渡된 商品代金을 支給하지 않거나 또는 支給能力을 喪失함으로서 賣渡人에게 致命的인 損失을 招來할 수가 있다. 물론 去來處의 選定過程에서 相對方의 信用을 充分히 調查하여 選定한 買受人이라 하더라도 國際貿易環境의 變動 내지는 輸入國의 與件變動 등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事態가 發生하여 支給不能狀態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貿易契約에 있어서 代金決濟條件은 貿易去來의 核心的 條件으로 看做된

4) 金容福, 信用狀論, 1989.3. pp.8-9.

다. 왜냐하면 貿易契約의 代金支給條項은 買賣契約의 原初的 要素이기 때문이다.⁵⁾ 특히 輸出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買受人이 그 代金を 指定한 期日에 確實히 支給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中心的 課題가 된다. 一面識도 없는 相對方의 財政狀態나 信用關係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사 財政狀態가 良好하다고 하더라도 道德性내지 信賴性에 대한 程度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銀行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國內의 輸出業者의 資産狀態는 比較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重要한 어음支給人인 海外輸入業者의 信用狀態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不確實要因이 많아 金融의 安全性에 대하여 不安을 갖게 된다. 이러한 貿易去來의 不安要因이 상존하는 한 貿易去來에 있어서 換어음 去來가 어려워져 貿易去來自體가 困難하게 된다는 것은 自明한 것이다. 輸出換어음은 國內에 있어의 換어음과 달리 銀行이 買入할 境遇, 아직 支給人의 引受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음이고, 大部分 그 支給人은 外國의 輸入業者라는 特殊한 事情 때문에 어떠한 方式이든 그 支給保證이 되어 있지 않는 한 銀行側로서는 該當 어음의 買入에 難色을 表하게 된다. 설사 D/P, D/A처럼 換어음에 商品이 擔保로 提供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不充分할 수도 있으며 擔保物 處分이 不可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境遇 輸出業者가 當該 換어음에 대한 割引을 要請하여도 推尋어음으로 取扱되어 輸出業者로서는 資金上의 壓迫을 避할 수가 없게 되어 輸出去來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貿易去來上의 代金回收不能危險을 減少시키고 어음決濟의 不便이나 不安을 除去하여 國際貿易去來를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信用이 높은 銀行이 代金支給을 確實하거나 輸出業者가 發行한 어음의 支給을 保障해 준다면 輸出業者로서는 輸出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할 수 있으며, 輸入業者로서도 商品의 所有權을 表示하고 있는 運送書類와 相換으로 銀行에서 代金を 決濟하게 한다면 역시 進取的으로 收入去來를 隨行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輸出入業者 모두 去來銀行으로부터 貿易去來上의 金融上의 惠澤을 提供받을 수가 있어서 貿易去來가 急激히 增大되고 企業의 利益機會를 增大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背景속에 信用狀去來가 하나의 商習慣으로 英國 등 유럽 國家에서 生成되어 오늘날 全世界의 으로 널리 活用되고 있는 現實이다.⁶⁾ 信用狀去來는 輸出業者 모두를 滿足시키며 또한 輸出貨換에 대한 決濟의 確實성이 保障되어 信用狀은 貿易去來의 潤滑油的 役割을 堪當함으로써 國際貿易의 增大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 行하여지고 있는 代金決濟方式 가운데 가장 合理的인 決濟方式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2) 信用狀去來慣行의 原理

信用狀은 貿易去來上의 代金回收不能의 危險과 商品入手不能의 危險을 解消시켜 貿易去來의 圓滑化를 期하기 위해 商去來上 必要에 의해 慣行的으로 生成된 것이므로 信用狀의 原理는 國際

5)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1984, Europa Publications Limited., London, p.54.

6) 飯田勝人, "信用狀의 基本的 原理", 金融法務事情 No.1097, p.41, 1985.8.刊

賣買去來에서 賣渡人과 買受人간에 第三者(은행 또는 巨商 等)의 信用을 介入시켜 賣渡人과 買受人의 信用狀態를 強化시켜 준다.

따라서 信用狀去來慣行의 原理는 信用狀⁷⁾의 基本的 原則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信用狀의 基本原則는 貿易去來의 書類의 側面과 物品의 側面을 嚴格히 區分하여 銀行은 오직 書類의 側面에만 關聯되어 있으며 物品의 側面에는 關聯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明確히 하는 데 있다⁸⁾고 하여 이들 信用狀 統一規則에서도 明文化하고 있다. ⁹⁾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모든 關係當事者는 書類로 去來하는 것이지 當該 書類에 關聯될 수 있는 物品, 서어비스 및/또는 其他 契約移動으로 去來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信用狀去來의 基本的 慣行은 書類의 去來이지 物品의 去來가 아님을 明確히 하고 있다.⁹⁾ 이러한 信用狀去來의 基本的 原理에 따라 信用狀去來에 있어서는 書類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는데 은행에 있어서의 信用狀去來의 書類의 審査基準의 基本的 原則을 類推해보면 다음과 같이 設定할 수가 있겠다.

첫째, 信用狀은 그 基礎가 되고 있는 賣買契約과는 전혀 分離, 獨立되어 있으며, 銀行의 約定은 信用狀上의 條件으로 나타나는 것에 한하고 賣渡人인 收益者와 買受人인 顧客間의 紛爭에 介入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銀行은 信用狀去來의 圓滑한 決濟를 위하여 書類가 外觀上 正當한 境遇 支給義務를 負擔하게 되는 것이다.¹⁰⁾

둘째, 信用狀의 收益者는 銀行의 履行을 強要하기 위하여 信用狀의 條件에 嚴格히 一致하여야 한다는 信用狀去來의 한 當事者이며, 最終的으로 代金を 支給할 경우 信用狀 發行銀行은 書類의 信用狀條件 不一致를 理由로 代金支給을 拒絕할 수가 있다. 이는 收益者로 하여금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 書類의 提示를 要求함과 同時에 發行銀行에게는 이와 같은 書類를 提示하는 收益者에게는 代金支給의 巨額을 할 수 없도록 嚴格하게 規制하고 있다.

셋째, 受益者가 提示하는 書類가 信用狀에게 要하는 條件과 相互 相反되지 않는 한 字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嚴格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는 相當一致의 原則(Substantial Compliance Rules)이 있는데 이는 受益者가 提示하는 모든 書類가 相互間에 矛盾이 없고, 비록 提示된 書類上에 要求되는 모든 內容이 正確히 記載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도 提示된 書類가 全體的으로 보아 信用狀의 諸條件을 充足하였다면 充分하다는 것이다.¹¹⁾ 즉 提示되는 書類를 너무 嚴格한 基準으로 判斷하여 綴字法의 잘못이나 指摘하여 代金支給을 拒絕한다는

7) 信用狀 統一規則의 原名은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貨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과 慣行)”로서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 1953년에 처음으로 制定된 이후 1951년에 제1차 改正, 1962년에 제2차 改正, 1974년에 제3차 改正, 1983년에 제4차 改正, 1994년에 제5차 改正, 施行되고 있다(韓國貿易協會, 信用狀, p.26, 1993.6.刊).

8)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7th edition, p.246, 1980.

9) 信用狀 統一規則 第5次 改定(以下 “UCP 500”이라 稱함) 第4條와 美國 統一商法典(이하 “UCC”라 칭함) 第5-114條.

10) 伊澤孝平, 商業信用狀, p.392, 1962.

11)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ocuments 470/328, 470/330, April, 1978.

것은 信用狀去來의 本來 目的을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國際貿易去來를 萎縮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信用狀의 獨立성과 함께 信用狀去來는 書類 上의 去來이지 商品去來가 아니라는 信用狀의 特質을 逆利用하여 書類의 變造 偽造 등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고 信用狀條件에 一致되는 書類를 具備, 提示하여 信用狀代金を 詐取하려는 信用狀 詐欺事件 등에 對備하기 위해 銀行은 例外的 規則인 Fraud Rule의 基本原理를 適用하여 書類審査에 있어서 豫防的 또는 救濟的인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信用狀去來를 하는데 있어서 發行銀行은 書類審査의 基本原則을 設定함으로써 信用狀이 貿易去來의 增進에 실직적으로 寄與할 수 있으며, 또한 信用狀去來에 관한 理解를 高揚시키기 위해서는 信用狀去來慣行의 特質에 관하여 正確한 知識이 요청되는 것이다.

3) 信用狀去來慣行의 特質

商業信用狀의 主要目的은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供給한 物品이나 서어비스를 위한 代金決濟手段을 마련하여, 賣渡人에게는 契約物品의 代金決濟를 保障해 주고, 買受人에게는 契約物品의 印度를 保障해 줌으로서 相異한 國家에서 去來活動을 하는 商人間의 去來를 促進하기 위한 것이다.¹²⁾ 따라서 信用狀은 이러한 信用狀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信用狀去來制度를 確立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國際商業會議所에서는 信用狀統一規則을 制定하고 貿易環境의 變化에 따라 5次에 걸쳐 改正하여 信用狀去來의 活性化에 크게 寄與하고 있으며 信用狀統一規則이 國際的 統一規約으로 定着된 바, 信用狀統一規則을 中心으로 信用狀去來慣行의 特質을 살펴 보고자 한다.

信用狀이란 그 名稱이나 表記에 關係없이 顧客(發行依頼人)의 要請과 指示에 따르거나 또는 銀行 自身을 위해 行動하는 한 銀行(信用狀發行銀行)이 信用狀의 諸 條件을 充足하는 所定の 書類와 相換으로 제3자(信用狀의 受益者, 또는 그의 指示人)에게 信用狀代金を 支給하거나, 受益者가 發行한 換어음을 引受 및 支給하거나, 그러한 支給, 換어음의 引受 또는 買入을 授權하겠다고 하는 모든 約定書を 意味¹³⁾하는 바, 信用狀은 信用狀代金の 支給에 관한 發行銀行의 確約이기 때문에 信用狀은 信用狀을 發行하고 通知하고 去來하는데 있어서 다른 約定과는 달리 特殊한 性質이 있는데 이것이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이다.

(1) 信用狀去來의 獨立性

信用狀去來의 獨立性이란 信用狀은 本質上 비록 賣買契約이나 기타 다른 契約에 根據를 두고

12)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cit., p.1.

13) UCP 500 Article 2.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契約과는 別個의 去來이며 그런 契約과는 獨立되어 있고 또한 當該 契約에 拘束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데 이를 信用狀去來의 獨立性 原則이라고 稱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信用狀의 獨立性에 관해서는 美國의 統一商法典에서도 明確히 規定¹⁴⁾하고 있으며, 信用狀 統一規則에서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즉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s)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pay, accept and pay Draft(s) or negotiate and/or to fulfil any othet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hi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信用狀은 本質의으로 그것이 基礎를 두고 있을 수 있는 賣買契約 또는 其他 契約과는 別個의 去來이며, 따라서 銀行은 그러한 契約에 대한 여하한 參照事項이 信用狀에 包含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契約과는 결코 無關하고 또한 이에 拘束되지 아니한다. 結局 銀行이 支給, 환어음의 引受 및 支給 또는 買入한다거나 및/또는 信用狀에 따른 기타 모든 義務를 履行한다는 確約은 發行依頼人이 發行銀行 또는 受益者와의 關係에 基礎하여 主張하는 請求權 또는 抗辯에 支配받지 아니한다.¹⁵⁾)" 라고 規定하여 信用狀去來의 獨立性을 保障하고 있다. 이러한 信用狀 去來의 獨立性은 信用狀去來의 圓滑化를 위해서는 必然的인 原則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賣渡人과 買受人間에 이루어지는 賣買契約의 詳細한 內容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賣買契約에 관해서는 第三者의 立場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알려고 할 必要도 없는 것이며, 특히 信用狀發行銀行은 信用狀發行依頼人과 締結하는 信用狀發行約定에 따라 그 約定을 充實히 移行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信用狀去來의 獨立性은 英國과 美國의 여러 判例에 의해서 確立되어진 原則이다.¹⁶⁾ 물론 信用狀이 發行되기 까지는 賣渡人과 買受人間에 "信用狀을 代金 決濟手段으로한 賣買契約이 締結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賣買當事者間的 契約일 뿐 信用狀去來와는 別個의 것이므로 賣買契約이 信用狀去來의 基礎가 되었을 지라도 信用狀去來에 어떤 影響을 直接的으로 미친다는 것은 論理上 矛盾이 되는 것이다. 萬一 信用狀去來에서 그 獨立性이 保障되지 않는다면 銀行이 賣買當事者가 되어 貿易去來가 마치 3者間的 賣買契約이 되어 貿易去來가 圓滑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信用狀이 오늘날과 같이 널리 利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急激히 增加된 國際交易에 信用狀이 寄與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의 獨立性은 國際貿易 去來에 있어서 信用狀에 의한 代金決濟의 貿易慣行에 必需的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14) UCC., 第5-114條.

15) UCP 500 Article 3.

16)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cit., pp.71-75.

(2) 信用狀去來의 抽象性

貿易去來는 隔地者間의 商去來이기 때문에 物品이나 用役을 抽象化시킨 書類에 의해서 去來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物品을 代表하고 證券化시킨 船荷證券은 오래전 부터 貿易去來의 擔保書類로서 使用, 認定되어 왔으며 書類自體의 信賴度는 貿易去來의 成事에 決定的인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特히 信用狀去來는 信用狀의 獨立性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賣買契約과는 別個의 去來이므로 信用狀去來는 信用狀의 獨立性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賣買契約과는 別個의 去來이므로 信用狀去來의 모든 關係當事者는 書類에 의해서 去來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去來慣行은 英國과 美國에 있어서의 여러 判例에 의하여 基本的 法原理로 定着¹⁷⁾ 되었으며 信用狀 統一規則에서도 다음과 같이 “信用狀去來의 抽象性”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즉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¹⁸⁾.” 와 같이 明示하여 信用狀去來가 書類의 去來임을 國際貿易去來에서 慣行化되고 承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信用狀去來는 實際去來되고 있는 物品이나 用役に 重點을 두고 去來하는 것이 아니라 信用狀에 의해서 “要求되고 제시된 書類”에 基礎를 두고 信用狀에 의한 義務履行 與否 및 그 適正性 與否를 判斷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書類에 의한 去來는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특징적인 去來形態이기 때문에 이를 信用狀去來의 抽象性의 原理라고 하는데 이는 賣買當事者間에 締結된 賣買契約의 物品이 실제로 어떠한 狀態이든 信用狀去來와는 別個의 事項이며 信用狀去來는 信用狀에서 要求하는 書類만이 信用狀去來約定의 履行 與否의 決定要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契約物品이 目的地에 書類보다 먼저 到着되었을 때 買受人이 物品狀態를 確認한 後 物品의 瑕疵를 理由로 信用狀條件上의 適正한 書類의 引受를 拒否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到着된 物品이 契約物品과 相異하다고 하더라도 提示된 書類上에 下車가 없으면 關係當事者는 信用狀上의 義務履行을 拒絶할 根據가 없는 것이다. 結局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것은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의 諸條件을 充實히 充足시켰느냐 하는 점인데 萬一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 條件을 誠實하게 充足시켰다면 物品의 到着與否 및 物品의 狀態에 關係없이 信用狀代金を 決濟해야 하며,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과 相異하다면 信用狀 發行依頼人은 代金を 支給할 義務가 없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信用狀去來에서는 物品을 引受하고 點檢한 後에 代金を 支給하겠다는 主張은 成立할 수가 없으며 提示된 書類가

17)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 5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74, pp. 71-72.

18) UCP 500 Article 4.

19) Finkelstein Herman M., Legal Aspec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外觀上 信用狀條件에 附屬되는 限 代金支給의 義務를 回避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신용장거래는 賣買契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은행과의 약정이고 거래이기 때문에 오직 서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장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信用狀去來의 抽象性을 拒否한다면 信用狀의 存在意義가 喪失되고 信用狀去來가 오늘날 처럼 活潑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類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信用狀去來의 獨立성과 抽象성은 信用狀의 存在價値를 받혀주는 兩大支柱이며 信用狀去來의 核心的 特質이라고 判定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성은 信用狀 關係當事者들의 權利 義務關係에 至大한 效力을 發生시키며 信用狀 關係當事者들의 權利 義務關係에 관한 分析 考察은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에서 出發해야 한다고 思料되기 때문에 本 稿에서는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성과 關聯하여 信用狀去來의 主要한 當事者인 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에 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3. 信用狀 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

1)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의 發生과 消滅

(1)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의 發生과 消滅

信用狀이란 信用狀發行依頼人의 要請과 指示에 따라 信用狀條件을 充足한 書類와 相換으로, 受益者 또는 그 指示人에게 信用狀 代金を 支給하거나 受益者가 發行한 換어음을 引受, 支給하거나 또는 當該 換어음의 支給, 引受, 買入을 授權하겠다는 發行銀行의 約定이기 때문에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發行銀行의 位相은 絶對的인 것이며 信用狀發行銀行의 債務는 信用狀을 發行함으로써 莫重해지는 것이다. 國際貿易契約에 있어서 賣買契約當事者間에 代金決濟를 信用狀에 의해서 支給하기로 契約했을 境遇 買受人은 約定한 期間內에 去來銀行을 통하여 信用狀을 發行해야 한다. 왜냐하면 信用狀이 提供되지 아니하면 賣買當事者間의 契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信用狀의 發行時期에 관해서는 事전에 賣買當事者間에 約定할 수도 있겠으나 特約이 없는 境遇에는 船積에 支障을 주지않는 合理的인 期間內에 發行해야 한다. 여기에서 “合理的인 期間”이라 함은 契約日로부터 起算한 時期가 아니라 最初의 船積日로부터 逆算한 合理的 時期를 意味하는 것²¹⁾이므로 船積에 支障을 주지 않는 期間內에는 信用狀이 發行되어야 할 것이다.

20) Clive Schmitthoff, op.cit., p. 253.

21) Clive Schmitthoff, op.cit., pp. 253-254.

信用狀의 効力發生時期 즉 信用狀의 成立時期에 관해서는 信用狀統一規則上에 아무런 明示가 없지만 美國의 統一商法典에서 信用狀의 成立時期는 信用狀發行依頼人에 대한 境遇에 受益者에 대한 境遇로 區分하여 規定하고 있다.²²⁾

첫째 信用狀發行依頼人에 있어서는 信用狀 또는 信用狀發行에 관한 權限있는 書面通知書가 賣渡人에게 送達된 때 信用狀去來가 開始된다.

둘째 受益者에 있어서는 信用狀 또는 信用狀發行에 관한 權限 있는 書面通知書를 受領할 때 信用狀去來가 開始된다.

따라서 信用狀의 成立時期는 意思表示의 到達主義²³⁾를 援用하여 信用狀 또는 信用狀發行에 관한 權限있는 書面通知書가 賣渡人에게 到達했을 때 成立하여 効力を 發生한다²⁴⁾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信用狀의 成立時期에 關心을 두는 理由는 信用狀 自體가 하나의 約定書이며 信用狀이 成立되는 時點이 바로 發行銀行의 發行依頼人에 대한 權利가 發生되는 時點이 되기 때문이다.

信用狀의 成立으로 인하여 取得된 發行銀行의 權利는 發行依頼人이 信用狀條件에 따라 提示된 書類를 引受하고 代金を 支給함으로써 自動적으로 消滅되는데 發行銀行은 發行依頼人에게 文面上 信用狀條件을 充足한 書類를 提示해야 하며 發行依頼人이 當該 書類와 相換으로 換어음金額(物品代金 相當)을 償還함으로써 發行銀行의 擔保權取得權利라든지 代金償還請求權利가 消滅되는 것²⁵⁾이다.

이와같이 發行銀行의 權利는 信用狀의 成立時期 즉 信用狀의 受益者에로의 到着時點에서 發行하였다가 發行依頼人이 信用狀條件을 充足한 書類와 相換으로 物品代金を 發行銀行에 補償하였을 때 消滅된다고 할 수가 있겠다.

(2)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의 發生과 消滅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信用狀을 發行할 때는 반드시 當該 信用狀이 取消不能인지 또는 取消可能인지를 明示해야 하며 그러한 明示가 없을 境遇에는 取消不能信用狀으로 看做토록 規程²⁶⁾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信用狀의 取消不能性を 明示의으로 規定하는 것은 信用狀發行銀行의 確約에 대한 信賴性を 弱화시켜 信用狀의 利用을 活性化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信用狀發行銀行의 確約은 오늘날 國際貿易去來에 있어서 絶對的 要因으로 作用하며 또한 信用狀發行銀行의

22) UCC 第5-106條.

23) 韓國民法 第111條.

24) 伊澤孝平, 前掲書, p. 371.

25) 小峯登, "信用狀의 知識", p. 99, 日本經濟新聞社, 1987.

26) UCP 500 Article 6.

確約은 곧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와 相互 互換의으로 表現할 수가 있다. 따라서 取消不能信用狀에 있어서, 이러한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는 受益者가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키는 한 有効期間內에 絶對的인 것이기 때문에 信用狀이 受益者에게 通知되고 送達되는 순간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가 發生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派生된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는 信用狀條件을 充足한 書類와 償還으로 受益者나 그 指定人에게 代金を 支給함으로써 消滅되지만 信用狀統一規則에서 規定하고 있는 信用狀發行銀行의 消滅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는 信用狀發行銀行이 信用狀條件을 充足시킨 書類와 償還으로 受益者 또는 그 指示人에게 代金を 支給했을 境遇에 消滅한다고 하겠다. 信用狀을 送達받은 受益者는 契約物品을 船積한 後 信用狀條件에 附合되는 書類를 具備하고 換어음을 發行하여 “信用狀 有効期間內”에 銀行에 提示하면 書類審査 後 合當하다고 判斷하여 當該 換어음을 引受, 支給하였을 境遇에 信用狀發行銀行으로서의 義務를 履行한 것이며 同時에 그 義務가 消滅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信用狀에도 書類를 提示해야 할 有効期日을 明示하도록 規定²⁷⁾하고 있기 때문에 信用狀有効期日이 經過하면 信用狀發行銀行이 義務는 自動的으로 消滅되는 것이다. 銀行은 營業時間 以外에 提示된 書類를 受理할 義務가 없기²⁸⁾ 때문에 書類는 銀行의 營業時間以內에 提示되어야 하며 信用狀有効期日이 經過했을 境遇에는 當然히 銀行은 當該 信用狀의 모든 責務에서 免除되어 信用狀發行銀行義務도 消滅되는 것이다.

셋째 有効하게 發行된 信用狀이 取消되었을 境遇에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는 消滅되는 것이다. 信用狀은 境遇에 따라 取消할 수가 있는데, 取消可能信用狀은 信用狀發行銀行이 언제든지 受益者에게 事前通知없이 取消할 수가 있고,²⁹⁾ 取消不能信用狀은 信用狀發行銀行, 確認銀行(存在할 境遇) 및 受益者가 同意할 境遇에 取消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따라서 信用狀이 取消되었다는 것은 信用狀發行銀行의 確約을 意味하기 때문에 信用狀이 取消되면 當然히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가 消滅된다고 看做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의 義務

信用狀은 賣渡人과 買受人間에 締結되는 買賣契約과 關聯하여 發行되지만 當該 買賣契約은 信用狀發行銀行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으며 오직 信用狀은 信用狀發行依頼書에 明示된 買受人의 指示內容에 따라 發行되었을 뿐이고, 信用狀이 發行되었을 경우 信用狀發行銀行은 顧客인 信用狀

27) UCP 500 Article 42.

28) UCP 500 Article 45.

29) UCP 500 Article 8 (a).

30) UCP 500 Article 9 (a-1).

發行依頼人에 대해서는 하나의 代理人이며, 受益者에 대해서는 本人이 되는 것이다.³¹⁾ 따라서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는 이러한 信用狀의 特異한 性質을 基礎로 하여 糾明되어야 할 것이다. 즉 信用狀은 賣買契約과 關聯하여 發行依頼되지만 信用狀을 發行하기 위해서는 發行의뢰인이 信用狀發行約定書의 樣式에 署名하여 銀行에 提出해야 하며, 그 發行約定書에는 銀行이 信用狀發행을 確約하는 모든 條件과 發行依頼人の 指示事項이 記術되기 때문에 信用狀發行約定은 賣買契約과는 別個의 契約이며 또한 이렇게 발행된 信用狀의 條件履行與否는 書類에 의해서 判斷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信用狀發行約定書上의 內容만 가지고는 賣買契約의 正確한 內容을 把握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銀行이 契約物品을 調査하여 賣買契約의 違反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契約物品의 現品을 直接 調査한다는 것은 現實的인 側面에서나 經濟的, 時間的 側面에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信用狀條件의 履行與否는 賣買契約에 無關하게, 提示된 書類에 의해서만 判斷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信用狀去來慣行의 獨立性과 抽象性은 信用狀發行銀行의 信用狀發行의 前提가 된다는 側面에서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를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1)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

信用狀은 發行依頼人の 要請과 指示에 의하여 發行되고 信用狀條件을 充足하는 限 受益者에 대하여 絶對的인 代金支給에 대한 確約일 뿐만 아니라 指定銀行 또는 中間銀行(支給, 引受, 買入, 決濟銀行을 稱함)의 當該 信用狀에 따른 責務의 保證내지 報償確約이기 때문에 信用狀이 일단 發行되어 受益者에게 送達이 되면 信用狀發行銀行으로서의 相異한 危險負擔을 갖게 된다. 따라서 信用狀發行銀行은 信用狀發行에 따른 危險을 擔保하기 위하여 信用狀發行依頼人에 대하여 一定한 權利를 갖게 되는데 이를 區分해 보면 첫째 代金償還請求에 관한 權利, 둘째 擔保物取得에 대한 權利, 셋째 費用 徵求에 대한 權利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는 信用狀去來慣行에 있어서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을 保障하기 위해서도 確保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왜냐하면 信用狀은 賣買當事者間의 信用狀態를 強化시켜 商去來를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 代金支給手段이며 더욱이 信用狀發行銀行은 賣買契約의 內容이나 契約物品의 品質, 販賣經路, 用途 등에 대하여 專門의 知識이 不足하여, 信用狀發行銀行이 賣買契約의 當事者로 介入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고, 同時에 信用狀發行으로 인하여 收益者 또는 그 指示人, 指定銀行 또는 中間銀行에 대하여 事實상 代金支給 또는 債務에 대한 保證을 確約하는 것이 信用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信用狀發行銀行은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에 의하여 賣買契約上의 問題에 拘隘받지 않고 오직 信用狀에 明示되어 있는 條件에 充足된 書類를 發行依頼人에

31)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cit., p.56.

게 引受케하여 代金を 償還받을 權利가 있으며³²⁾ 發行依賴人의 信用狀約定에 대한 履行不能 및 信用狀去來上 發行할 수도 있는 信用狀發行銀行의 損害(契約物品의 價格下落 等)를 補償하기 위하여 擔保物을 確保하여 取得할 權利가 있으며,³³⁾ 信用狀去來를 行함으로써 發生될 수 있는 모든 危險과 費用을 發行依賴人으로부터 徵求할 權利가 當然히 주어지는 것이다.³⁴⁾ 또한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에 의해 가장 保護를 받고 있는 支給, 引受, 買入銀行에 信用狀發行銀行으로서 債務履行을 確保하기 위해서도 信用狀發行銀行의 擔保物取得權利는 반드시 保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權利는 信用狀發行約定書에 의해 確實히 保障되고 있다.

(2)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

信用狀은 오늘날 國際貿易去來의 代金決済手段으로 重要な 位置를 점하고 있지만, 美國에 있어서는 物品의 賣買去來보다 商去來上의 債務保證用 즉 차관제공확약의 保證書, 機械設備賃貸契約에 의한 賃貸料支給保證書, 建設工事契約履行保證書, 運轉資金先給保證書 等으로 주로 活用하여 왔음을 여러가지 事例에서 알 수 있으며³⁵⁾ 英國에서는 平常時에는 商去來에 있어서 代金決済手段으로 換어음推尋制度를 利用하고, 景氣가 나쁠 때 信用狀에 대한 選好度가 높은 趨勢이다. 이와 같이 信用狀이 大規模 商去來의 保證用으로 利用되고 그리고 景氣狀態가 不良할 때 信用狀의 利用빈도가 增大되고 있는 것은 信用狀發行銀行의 信用을 信賴하기 때문이며 信用狀 發行으로 인하여 信用狀發行銀行의 責任이 그 만큼 막중해진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發行銀行은 信用狀發行으로 인하여 信用狀發行依賴의 “當事者가 아닌 第3者”인 受益者와 指定銀行 또는 中間銀行에 대하여 信用狀條件이 履行되는 한 代金支給의 義務를 지게 된다.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信用狀發行銀行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發行依賴人인 買受人에 대해서는 代理人의 立場에 있게 되고 受益者인 賣渡人에 대해서는 本人의 立場에 있기 때문에 境遇에 따라서는 發行依賴人의 立場을 擁護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즉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에도 不拘하고, 信用狀發行銀行은 자신의 顧客인 發行依賴人의 履行補助者의 立場에서 買受人의 利益을 擁護하고 더 나아가서 發行依賴人 與信關係에의 惡影響을 避하기 위하여 發行依賴人의 要請에 의하여 賣買契約의 違反을 理由로 信用狀에 依據하는 支給, 引受, 내지 補償의 拒絶을 試圖하려고 하는 傾向이 있을 수 있다.³⁶⁾ 그렇지만 信用狀發行銀行은 賣買契約이나 信用狀發行約

32) 小峯登, 外爲替實務의 共同研究”, 金融法務事情 第912號, pp101-102, 1983. 12.

33) 實務적으로는 信用狀發行申請과 約定書의 裏面に 擔保借入證을 印刷하여 信用狀發行約定에 대한 信用狀發行依賴人의 義務履行 擔保物을 提供받고 있다. (朴大衛, 信用狀, 第2改訂版, 1988. 1. p. 384 參照)

34) UCP 500 Article 18.

35)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cit., p.1의 脚註 參照.

36) 朝岡良平,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pp. 48-51,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定書 또는 發行依賴人의 資金事情 등으로 受益者 또는 中間銀行에 대해서는 信用狀發行銀行으로서 義務履行을 強要하는 特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즉 信用狀이 發行되고 受益者에게 送達된 後에는 買受人이 信用狀發行約定을 破棄하여도, 또는 發行依賴人인 買受人이 破産하더라도 信用狀 條件을 充足하는 書類를 提示하는 한 當該 信用狀에 따른 代金を 支給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은 信用狀發行銀行의 立場을 強化시켜 주기도 하지만 수익자가 信用狀 條件을 充足시키는 限 代金支給義務를 確約시키는 要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4. 結 論

國際貿易去來에 있어서 信用狀은 賣渡人과 買受人間의 物品의 引渡와 代金の 支給을 各々 圓滑히 할 수 있도록 銀行에서 發行한 支給約定이다. 이러한 信用狀은 國際貿易을 急激히 增大시키는데 크게 貢獻하였으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利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商業會議所에서 制定된 信用狀統一規則이 5회에 걸쳐 改定되면서 全世界的인 國際規則으로서 認定됨에 따라 信用狀은 名實共히 國際貿易決濟手段으로서 位相을 定立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中에서도 信用狀에 의한 代金決濟方式의 比重이 相當하여 1980년에 總輸出 약 US\$175億 가운데 L/C Base決濟가 約 80%에 該當하는 約 US\$140億弗이며, 1985년에는 總輸出 約US\$303億 가운데 L/C Base가 US\$186億弗로서 약 62%에 달하고, 1991년도에는 總輸出 約 US\$719億 가운데 L/C Base決濟가 約 70%에 該當하는 約 US\$500億弗에 달해 總輸出에서 信用狀이 代金決濟手段으로서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信用狀의 利用增大와 함께 信用狀에 關聯된 詐欺事件들이 最近에 急激히 增大되고 있는 現實을 直視할 때 信用狀에 관한 的確한 知識과 信用狀去來慣行의 原理와 特質을 理解할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信用狀紛爭의 豫防을 통한 貿易商務의 競爭力 強化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稿에서는 이러한 信用狀에 관한 現實的인 要求에 副應하여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을 中心으로 하여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를 糾明해 보았다.

信用狀이란 銀行의 條件附 支給約定이기 때문에 信用狀 條件을 充足시키는 限 發行銀行의 代金支給義務는 絶對的으로 履行해야 하며 信用狀 條件에 合當한 書類를 提示하는 限 信用狀發行銀行은 發行依賴人에 대해서 代金償還에 대한 權利와 擔保物取得에 관한 權利 그리고 費用徵求에 대한 權利를 保障받고 行使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信用狀去來의 獨立 抽象性은 信用狀發行銀行의 立場을 強化시켜주기도 하지만 信用狀條件에 合當한 書類가 提示되는 한 信用狀條件

以外的 어떠한 事情에 의해서 受益者 또는 中間銀行의 正當한 支給, 引受의 要求를 回避할 수도, 對抗할 수도 없기 때문에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履行을 強要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信用狀去來慣行의 特質인 獨立抽象性의 側面에서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를 考察해 보았지만 未盡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信用狀 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에 관해서 여러가지 側面에서 分析 考察의 必要性을 절감하면서 줄고를 마치고자 한다.